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
----------	----

제출년월일 : 2003. 11.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사무관리규정(2002.12.26 대통령령 제17811호) 및 사무관리시행규칙(2003.7.14 행정자치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폐기하였으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고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이관하여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관리하여 시대 변천자료로 활용 (안 제6조제2항)
- 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변조했다는 민원을 제기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에 대한 사항 명문화 (안 제6조제4항)
- 다. 전자이미지공인을 일반공인처럼 부산광역시사하구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 내실화 도모 (안 제7조)

### 3. 관계법령

-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시행규칙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폐기,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좌·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세입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 및 그 분임자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관직에 따른 직인을 비치·사용한다.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특수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등록) ① 행정기관은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등록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사하구가 발행하는 공보인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

##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	길이(cm)	모 형
1. 행정기관의 직인		
가. 구청장	3.0	정방형
나. 직속행정기관장, 동장	2.4	"
다. 사업소의 장		
1) 4,5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2.4	"
2) 6,7급 공무원인 사업소장	1.8	"
2.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	"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	"
3. 합의제 기관의 청인	3.6	"
4. 합의제 기관의 장의 직인	3.0	"

비고 : 본 조례 이전에 각인된 것은 각인된 직인이 폐기되기까지는 종전 규격대로 사용한다